

Report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리의료법인 도입방안



글 ·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원장

I. 영리 의료법인 허용의 경제적 · 정책적 필요성

1.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1) 의료서비스 산업의 높은 성장 전망

- GDP 대비 의료비 : ('01) 5.9% → ('10전망) 8.1% → ('30전망) 16.9%

* '01년 OECD 평균 8.2%(미 13.9%, 독 10.8%, 일 7.8%, 영 7.5%)

2) 의료서비스 산업의 높은 고용창출 효과

- 생산액 10억원당 취업자수 : 전체 산업 평균 12.2명, 제조업 4.9명, 의료서비스산업 16.3명

3) 전경련에 따르면 2002년도 서비스무역 적자규모는 74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의료분야의 서비스 적자규모가 10억 달러를 차지

2.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영리의료법인 허용 필요성

생명공학(BT)은 우리나라의 10대 성장동력산업의 하나이며, 줄기세포 연구, 신약개발 등에 있어 의료서비스 산업과 밀접한 상호의존관계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는 미즈메디 병원 등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병원의 지원과 공동연구에 힘입은 바 큼

- 1) 생명공학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민간병원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첨단 시설을 갖춘 대형 의료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2) 대규모 투자자본을 유치하여 첨단 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본 회수가 가능한 영리 의료법인 허용이 필수적임

II. 영리 의료법인 설립 금지의 헌법적 문제점

- ◆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해
- ◆ 평등권 침해
-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1. 직업선택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해

- 1)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결사의 자유(제21조제1항)를 침해

* 약사법인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 설립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인 동시에 결사의 자유의 내용이 된다고 판시¹⁾

2. 평등권 침해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약사 등 공적 성격이 있는 타 전문직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의료분야에 대하여만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

* 위 약사법 관련 결정에서 현재는 타 전문직에 대하여는 법인 구성을 허용하면서, 약사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시

3.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 1)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침해

1) 헌법재판소 2002.9.19 2000 헌바84

- 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헌법상 인정²⁾
- 2) 영리추구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통제, 의료법인 출자자의 자격 제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의료법인 설립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

III. 영리 의료법인 도입방안

- ◆ 의료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 ◆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직업윤리를 견지할 수 있도록 조화

가. 고려가능한 영리 의료법인 허용 형태

1. 미국식 전문가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 허용 방안

- 1) 1안 : 의료인으로만 의료법인을 구성(현행 법무법인 형태와 유사)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경영참여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인만으로는 대규모 시설과 장비 투자가 곤란한 문제가 있음
- 2) 2안 : 비의료인의 참여를 허용하여 의료법인을 구성
-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하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경영참여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예컨대, 미국과 같이 임원의 50%, 출자 지분의 50% 이상을 의료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가능

2. 일본식 사단법인 허용방안

- 1) 일본의 '지분이 있는 의료법인'은 출자자가 소유지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만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영리법인과 큰 차이가 없고, 일본에서도 동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개혁을 고려중인 바,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는 곤란

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3. 상법상의 회사 형태를 허용하는 방안

1)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적절한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도록 허용

*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유리

나. 간접투자펀드 활용방안

1. 전제조건 : 영리 의료법인 허용

1) 각종 간접투자펀드를 통해 의료분야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어떠한 경우이든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는 투자대상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전제되어야 함

2. 간접투자펀드의 형태

1) 투자자가 영리 의료법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간접투자펀드를 활용하는 방안과 SOC민간투자법에 의한 인프라펀드나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REITs와 같은 특별한 의료산업투자펀드를 도입하는 방안 중 선택 필요

3) 간접투자펀드의 형태별 비교

형 태	내 용	장 점	단 점
사모펀드 (Private Fund)	기관투자자, 거액투자자 또는 30인 이하의 소수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배제되어 설립·운영이 간편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의 종류나 수가 제한되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곤란
공모펀드 (Public Fund)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	대규모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의료법인 운영수익을 일반 국민이 공유할 수 있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함
사모투자회사 (Private Equity Fund, PEF)	소수투자자가 경영권 참여 등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므로 투자유치에 유리	PEF의 법적 성격상 투자자가 의료기관 경영에 개입하게 됨

다. 검토의견

- ◆ 상법상 회사 형태의 의료법인을 허용
- ◆ 공모펀드를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되, 필요시 사모펀드 허용

1. 상법상 회사 형태 허용

- 1) 의료기관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 형태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필요
- 2)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위험부담이 크다는 단점
- 3) 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이 50인 이하로 제한되어 대규모 투자유치에는 불리
- 4)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유리

2. 의료산업투자펀드 도입

- 1) 의료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법 등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의료산업투자펀드를 별도로 규정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 * 인프라펀드(SOC투자)나 REITs(부동산투자), 선박투자회사의 예를 참고
- 2) 이 경우 공모펀드로 하는 것이 대규모 투자유치에 유리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병원 운영수익을 일반 투자자에 배분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음
- 3) 필요에 따라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경영에 간섭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형태는 불허 **KHA**